상색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 2013.4.9.
개정 2021.3.24.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상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은 유아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본원에서 유아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원은 상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라 칭한다.(이하 본원이라 칭한다.)

제3조 (위치) 본원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태봉두밀로 34-31에 둔다.

제4조 (교육목적) 본원은 유아에게 적합한 교육활동과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교육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아" 라 함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교육" 이라 함은 유아를 대상으로 그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평가하는 학교 교육을 의미한다.

제 2 장 수업연한, 학기, 휴업일

제6조 (수업연한) 본원의 수업 연한은 1년으로 한다.(유아교육법시행령 제12조)

제7조 (학기) 본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 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종료일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8조 (휴업일) 본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법 제12조 제3항)

1. 법정 휴업일
   ① 관공서의 공휴일
   ② 여름, 겨울과 학기말 휴가일
   ③ 학교재량휴업일
   ④ 개교(개원) 기념일
   ⑤ 토요일(5일제 수업을 원칙으로 하나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교육활동을 할 수 있음)
2. 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원을 할 수 있다.

제 3 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수료, 졸업

제9조 (교육과정) 본원은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① 계획: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및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본 원의 교육과정을 수립·실천한다.

② 경기유아교육 중점정책 및 혁신과제를 교육과정 전 영역에 반영하여 운영한다.

제10조 (수업일수)

① 본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하여 원장이 정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 제 3항)

②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현장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유치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출석 인정기간은 최대 30일로 한다.

③ 국가감염병 등 재난 상황 발생으로 수업일수의 조정・감축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다.

제11조 (수업과정) 본원의 수업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본원의 수업시간은 1일 4시간으로 편성한다. 단, 방과후과정은 정규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 운영한다.

② 주 5일 등원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업 운영은 교육과정과 그 이후는 방과후과정으로 운영한다.

제12조 (과정의 수료 인정) 과정의 수료인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 10조에 정한 일수의 1/2이상 등원자

② 중도입학자는 년간 수업일수의 1/2이상 등원자

제13조 (수료 및 졸업) 수료와 졸업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수료는 만5세미만아에게 인정한다.

② 졸업은 만5세아에게 인정한다.

제 4 장 전학, 입학, 퇴학, 휴학

제14조 (입학) 다음 항에 해당자로서 혼합반의 경우 20인 이하로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입학을 허가한다.

① 만 3,4,5,세로 구성된 혼합학급의 경우 만 4,5세에게 우선 입학의 기회를 제공한다.

② 입학방법은 당해연도 신입유아 모집 규정 및 입학관리시스템 선발방법으로 결정한다.

제15조 (전학) 학기 중 본원에 전입하려면 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원 초과 시는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타 유치원의 재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 (퇴학) 유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 소정의 퇴학원서를 제출받아 원장은 퇴학을 명할 수 있다.

① 거주지 이전 및 개인적 사유로 자퇴를 원하는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오랜 기간 결석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③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본인 및 타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 (휴학) 유아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을 원할 때에는 소정의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학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 5 장 학급편제

제18조 (학급편성) 본원은 혼합 연령의 단일반 1학급으로 편성한다. 다만 원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연령으로 편성할 수 있다(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12조 제3항)

제19조 (정원) 단일반의 정원은 혼합반 20인 이하로 한다.

①본원에 입학하려는 자가 정원을 초과할 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20조 (방과후과정 운영) 본원에 희망자에 대하여 교육과정 시간 후에 방과후과정을 운영한다.

① 희망자에 한하여 유치원 정규교육과정 종료 후 교육과정이 연장된 형태의 교육, 보호 통합과정을 운영한다.

② 방과 후 운영은 희망자에 한하여 운영한다.

③ 방과후과정 수업일수는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 6 장 수업료, 기타비용

제21조 (수업료)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한다.

제22조 (기타비용) 수업료를 제외한 그 밖의 비용 징수는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징수한다.

제 7 장 규칙 개정 절차

제23조 (규칙개정절차) 규칙의 개정은 원(감)장과 협의하여 규칙 개정안을 작성하되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인가를 받아 이를 최종 확정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원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인가를 받기 전부터 규칙 시행당시까지 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규칙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